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95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9호),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9호),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2호)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1.12.31., '23.6.13., '23.7.18., '23.12.5. 개정되어 관련 조항들을 일괄 정비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 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근거 마련 등 미비점을 정비함.

- 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조정하고, 심리안정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을 반영함.
-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 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시 부여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25조).
- 나.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산 연가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20조 및 별표 4).
- 다. 전염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감염병’으로 개정함(안 제27조).
- 라. 공가의 내용 중 감염병 예방에 따른 접종 또는 검사에 따른 공가를 추가하고, 「검역법」상 용어의 개정사항을 정비함(안 제28조).
- 마. 출산휴가의 대상의 확대(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에서 조산(早産)으로 확대), 난임치료시술휴가의 확대(1일에서 최대 4일),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시 휴가일수 확대(10일에서 15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9조 및 별표5).
- 바.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참석 시 주어지는 공가의 중복 제외를 명확히하고 근무시간 면제에 관해 명시함(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 사.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대해 구체화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3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 조치 : 박성연 의원안(의안번호 제979호) 비대상
이민석 의원안(의안번호 제999호) 비대상
최기찬 의원안(의안번호 제1402호) 미첨부2호 해당

다.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시부터 오전 6시”를 “9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단서 중 “2년 미만인”을 “5년 미만인”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가일수 중”을 “연가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

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기간의 공가를”을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참석”을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를 “수”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남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남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남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남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31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별표 4의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이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근검과 절약) ① (생 략)</p> <p style="margin-left: 2em;">② 공무원은 <u>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u></p>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② (생 략)</p> <p style="margin-left: 2em;">③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u>10시부터 오전 6시까지</u>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 style="margin-left: 2em;">1. 2. (생 략)</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제7조(근검과 절약)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em;"><u><삭 제></u></p> <p>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em;">③ ----- ----- ----- <u>9시부터 오전 8시</u> ----- ----- ----- . ----- ----- ----- .</p> <p style="margin-left: 2em;">1. 2.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em;">④ <u>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제18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u>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u></p>

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7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연가일수) -----
-----.

----- 5년 미만인 -----
----- 5년 미만의 -----
----- 3일-----.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
----- 연가일수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병가) ① -----

-----.

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생략)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28조(공가)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가) ----- 소속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

1. ~ 9. (현행과 같음)

10. -----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

11. -----

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신 설>

<신 설>

제29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 리지역-----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 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8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 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 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 다.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④·⑤ (생략)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

-----.

1. 2. (현행과 같음)

3. -----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

③ -----

----- 수 -----

-----.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 설>

----- 제6항 -----

-----.

⑧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
술휴가-----.

<단서 삭제>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
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
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
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
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
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
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
료일 중에 2일)

다. 남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
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

<신 설>

⑧ ~ ⑬ (생 략)

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 ⑭ (현행 제8항부터 제13항
까지와 같음)

⑮ 제14항-----

<삭 제>

⑯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별표 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2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2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배우자의 부모	5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배우자의 부모	5